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보장을 받는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,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를 대신하여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마련(법률 제20279호, 2024. 2. 13. 개정, 2024. 8. 14. 시행)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의 대리 신청 근거 규정(제28조의5제2항)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”을 “청장 또는 지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수급희망자의 소득·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28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”을 “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,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8조의5(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) ① 영 제53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(이하 “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”라 한다)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,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	제28조의5(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청장 또는 지청장----- ----- 다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수급희망자의 소득·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	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

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생계
지원금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
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게
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 각
호의 서류 제출은 생략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
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
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
를 받는 사람일 것

2. 거동이 불편하는 등의 사유
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
청을 하기 어렵다고 관할 지
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
이 인정할 것

3. 본인의 동의를 있을 것

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
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
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
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
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. 다
만, 소득·재산 등의 조사에 시
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
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
을 연장할 수 있다.

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
수급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
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에
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, 생
계지원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부
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
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
하도록 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
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----

-----.

-----.